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2025. 4. 2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35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5년 4월 11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금)

2. 제출사유

마포 365 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개장에 따른 체육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주변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1조 제3항)
- 나. 마포365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체육시설 추가(별표1)
- 다. 마포365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사용료 등 범위 규정 (별표2~별표4)
- 라. 만 나이 정비(안 [별표2] 비고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3. 14.~4.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5. 4. 8.)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포 365 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를 구립 체육시설 항목에 편입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자 2025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별표 1에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항목에 “마포 365 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를 추가하고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명칭	구분	기능	위치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19 (공덕동)

- 조례의 별표 2 “개인 사용료의 범위”에 동 시설의 사용료의 범위를 1,500원 ~ 4,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는 동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고 2025년 4월 2일 개최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용료 책정이라고 판단됨.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 관리센터	서강동 합정동 구민	성인· 청소년	5,000 ~ 10,000
			어린이	4,000 ~ 8,000
		마포 구민	성인· 청소년	6,000 ~ 12,000
			어린이	5,000 ~ 10,000
		타지역	성인· 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마포 365 구민센터 내 “건강관리센터(남·여 사우나) 사용료”는 서강·합정동 주민, 마포구민, 타구민 차등을 두어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도 역시 인근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적절한 사용료로 판단됨.

마포 365 구민센터 내 “건강관리센터”

- 서강·합정동 주민: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거주자로서 환경 상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료 추가 감면
- 마포구민: 마포주민편익시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축이고 시설이 더욱 쾌적한 점을 감안하여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이용료보다 소폭 인상하여 책정

※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이용료

(시행일: 2024. 11. 1., 단위:원)

명칭	구분	대상	이용료			비고
마포주민 편익시설	사우나 (대중목욕탕)	비상암동 거주주민	타지역	대인	7,000	※ 소 인 6세이하 경로우대 65세이상
			마포구	대인	5,000	
				소인	4,000	
		상암동 거주주민	대인		4,000	
			소인		3,000	
			경로우대		3,000	

- 타구민: 마포구 내 민간 사우나시설 이용료와 비교하여 책정

※ 마포구 내 민간 사우나시설 이용료

(단위:원)

상호명	이용료		비고
월드컵스파랜드24	대인	11,000	소 인 8살미만
	소인	9,000	
성산대중사우나	일반	9,000	어린이 6세이하
	어린이	6,000	
삼일사우나	대인	10,000	소 인 6세이하
	소인	9,000	

- 그리고, 마포 365 구민센터 내 별표 3의 “전용사용료”와 별표 4의 “그 밖의 시설 사용료” 역시 동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바, 적절한 사용료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 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GX1· GX2· 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 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 GX2· 다목적실2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 이와같이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구립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그 시설 명칭, 소재지를 신설하고, 시설 이용료를 반영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¹⁾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²⁾,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중 일부에 대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거주자에게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료 추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관련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마포구민 우선 이용제 시행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및 정책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1)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 법제처는 사용료 등 징수 및 가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으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이 제기된 바 있음. 정책 추진 시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체육시설 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